

# 모델 20

## 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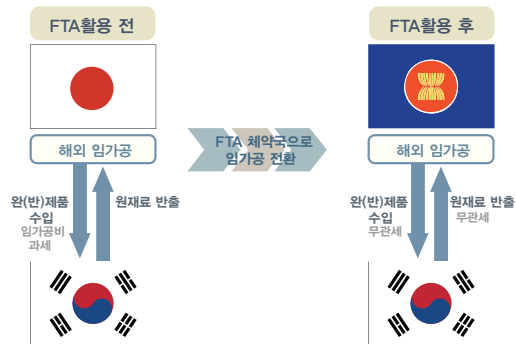
### 01 | 개요

- 비체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가공을 FTA체약국으로 이전하여 원재료 수출시, 완(반)제품 수입시 모두 FTA 활용 모델
  - \* 해외에 임가공 공장을 설립하거나, 파트너십을 통해 임가공을 수행하고 있는 아국기업 상당수가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

### 02 | 비즈니스 모델

-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서 임가공 후 완(반)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FTA를 활용하게 되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(반)제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
  - \* 관세법 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 시에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만 면세
    -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를 포함한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므로 원가절감이 가능
    - 원부자재 수출시, 완(반)제품 수입시 양방향 FTA활용 가능

비체약국에서 체약국으로 임가공 전환 모델



### 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종전 임가공국과 수출 대상 임가공국의 임금 등 여건이 유사한 경우 활용 유리